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51
----------	-------

발의연월일 : 2019. 11. 7.

발의자 : 경대수 · 이양수 · 황주홍  
오영훈 · 김성찬 · 강석진  
윤준호 · 손금주 · 손혜원  
박완주 · 김태흠 · 김현권  
정운천 · 강석호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4제1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를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4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해소한”을 “없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조성에 착수하지”를 “조성을 시작하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 ----- ----- ----- -----. -----.</p>
<p>1.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u>조성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u></p>	<p>1. ----- ---<u>조성을 시작하지</u>----- ---</p>
<p>2. ~ 4. (생 략) ② (생 략)</p>	<p>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